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정리

2023. 6. 14.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1. 개요

-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2021. 12. 22. ~ 2022. 12. 21.)는
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1안건), ②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2안건)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3회에 걸쳐 사법행정자문회의(제20차, 제21차, 제24차)에 보고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이 일부 도출된 바 있음
- 제2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2022. 12. 22. ~ 현재)는 1기 분과위원회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 외에 ③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3안건), ④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4안건)을 주제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는 위 각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일부 마무리하였는바, 그 주요 논의 결과를 자문회의에 정리·보고함
 - [1안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경과
 - [2안건] 재판연구원 증원 및 재판연구원 선발·배치 현황
 - [3안건]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방안 관련 주요 논의 결과
 - [기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획

2. 제2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1) 제12차 전체회의(2023. 1. 18.) 주요 내용

- 운영지원단, “사법행정자문회의 소개 및 관련 규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법조일원화제도 관련 논의 및 법원 조직법 개정 경과” 보고

▣ 제2기 분과위원회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 방식 및 일정 논의

● ① 회의 세부 주제 관련

- 제1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인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는 현재 발주 예정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된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함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논의 과정에서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교육, 역할, 업무 등)을 다루기로 함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법관 순환근무제도’에 관하여 지역법관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법관의 처우(급여·연금 기타 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이후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교육, 역할, 업무 등)’, ‘법관의 다양성 확보’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함
-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등을 고려하여,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1심 합의부 재판 및 2심 재판’을 중심으로 연구·검토를 수행하기로 함

● ② 일정 관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달에 1회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 검토 등 필요한 경우 회의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제13차 전체회의(2023. 2. 28.) 주요 내용

▣ 법관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논의

- 운영지원단, 법관 인사제도(순환근무제도)와 2014년 검토되었던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함
- 지역법관제도 폐지 배경,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의함

▣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관련 논의

- 운영지원단,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본 계획”을 보고함
- 심포지엄의 주제, 발제자, 토론자 선정에 관하여 논의함



3) 제14차 전체회의(2023. 3. 30.) 주요 내용

▣ 법관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논의

- 운영지원단, “지역계속근무법관 및 장기근무법관 현황”을 보고함
- 조재건 위원, 김신유 위원 순으로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제함
-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필요성, 권역별 법관선발·근무제 도입 여부, 순환근무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법관 인사패턴 및 인사주기 개선 여부, 스마트 워크 및 영상재판의 확대 여부, 지방근무 총량제 내지 유예신청제의 도입 여부, 동일법원 내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등에 관하여 논의함

4) 제15차 전체회의(2023. 4. 20.) 주요 내용

▣ 지역계속근무법관과의 영상간담회

- 지역계속근무법관으로부터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의견, 지역계속 근무경험 등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함
 - 황영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 법관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논의

- 운영지원단, “신임법관 권역별 희망순위 및 실배치 현황”을 보고함
-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관련 쟁점별 논의사항을 일부 정리함

▣ 운영지원단,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계획” 보고

▣ 향후 회의 주제에 대한 논의

- 향후 회의 세부 주제로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안건 중 “법관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함



5) 제16차 전체회의(2023. 5. 18.) 주요 내용

▣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보고

- 운영지원단,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를 위한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경과를 보고함
- 이를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1안건) 관련 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재판연구원 증원 관련 보고

- 운영지원단, “재판연구원 증원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 경과, 2023년 재판연구원 증원 및 선발·배치 현황”을 보고함
- 이를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2안건)’ 관련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법관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논의

-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관련 추가 논의를 실시한 후, 그 동안의 주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차원의 건의안을 확정함
- 이를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3안건)’ 관련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법관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

- 운영지원단, “신임법관 대학학부 전공”, “법관 다양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고함
- 법관 다양성 확보 방안 관련하여 기초 논의를 실시함



3. [1안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경과

가. 개요

■ 추진 배경

- 법조일원화제도와 평생법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2021. 12. 21. 개정 법원조직법¹⁾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 2022. 2. ~ 12.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를 위한 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법관 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함

- 2022. 12. 14. 제24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문의견을 제시함

■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법원조직법[법률 제18633호, 시행 2021. 12. 21.] >

제42조(임용자격)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경과

1) 연구 과제

-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를 위한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류전형평가 및 각종 의견조회를 중심으로 -

2) 연구자 선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계정 서울대학교 교수)

3) 연구 기간

- 2023. 6.초 ~ 2023. 11.말(약 6개월 예정)

4) 연구 용역비

- 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법관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법조경력 평가의 관점에서 현재 법관 임용절차의 적정성 평가
 - 현재 법관 임용절차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평가 방식, 각종 의견조회 절차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외국 법관 임용절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평가가 요청됨
- 법조일원화제도와 평생법관제도 정착 등을 위해 법조경력을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분석
- 최소 법조경력 상향 시기에 맞는 전면적 또는 단계적 절차 개선을 대비한 각종 계획안 검토

■ 연구방법론



- 현재의 법관 임용절차의 현황, 실태 등 분석
- 각종 방법론을 종합한 현재 절차의 법조경력 평가의 적정성 분석
 - 법관 대상 설문조사(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포함)
 -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법관, 변호사 등)
 - 각종 통계 분석(법관 임용 결과 등)
- 비교법적 연구
 - 법조일원화 국가에서의 법관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의견조회 방식
- 타 국가(공공)기관 및 (공·사)기업 등에서의 경력자 선발 시 평가 및 의견조회 방식
- 법조경력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실현 가능성 및 예산 소요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개선방안에 관한 결론 제시

6) 진행 경과

- 2023. 1.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과제 선정 심의
- 2023. 2. 원가 조회 및 입찰 공고
- 2023. 4. 입찰 재공고
- 2023. 5.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연구자 선정 심의
- 2023. 6. 용역계약 체결(연구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3. 11. 최종 보고 및 결과 도출 예정

다. 향후 계획

-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1안건)에 대한 관련 논의 계속 예정



4. [2안건] 재판연구원 증원 및 재판연구원 선발·배치 현황

가. 개요

▣ 추진 배경

- 법조일원화제도와 평생법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충원이 필요함

▣ 추진 경과

-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결과보고
 - 2022. 3.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 2022. 2. ~ 6.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재판연구원의 증원 필요성과 증원 규모’ 등에 관하여 논의함

▣ 법조일원화 정착 및 사실심 충실화를 위하여 재판연구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함

▣ 재판연구원 증원은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법원의 인적구조와 재판부 구성의 변화,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의 특성(난이도, 중요성 등), 재판연구원 외의 재판보조인력 확보 문제, 소요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시기(단기/중·장기²⁾) 별로 증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규모를 정해서 순차적·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22. 6. 8.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문의견을 제시함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현재 3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2) 향후 2~3년 내를 단기로, 그 이후를 중기(2025년~2028년)·장기(2029년~)로 구분함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증원함

-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하여야 함
- ▣ 법원행정처는 각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재판연구원 증원 및 재판연구원 선발·배치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나.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를 통한 재판연구원 증원

▣ 2022년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를 통해 2023년 재판연구원 정원 350명으로 전년대비 50명 증원함(2022년 300명 ⇨ 2023년 350명)

● [참고] 정원 변동 연혁(재판연구원규칙 제2조)

2011. 10. 26. 제정	2018. 12. 31. 개정	2019. 12. 26. 개정	2023. 1. 31. 개정
200명	250명	300명	350명

▣ 2024년 재판연구원 정원 400명으로 전년대비 50명 증원 추진중(2023년 350명 ⇨ 2024년 400명)

다. 2023년 재판연구원 선발·배치 현황

▣ 재판연구원 선발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정
정원		300	350	400
경력 구성	1년차 (신규선발)	100 ³⁾	150	150
	2년차	100	100	150
	3년차	100	100	100

3) 공석 발생 등의 사정으로 22년 신규 선발인원은 100명 내외, 2023년 신규선발인원은 150명 내외이나



- ① **선발규모 확대:** 2022년까지 매년 100명 내외의 인원을 권역별로 선발하였다가, 2023년 정원이 350명으로 확대되면서 2023년 158명(신규 선발 150명 + 공석에 따른 추가 선발 8명)의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할 예정
 - 2023. 2. 27.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용
 - 2023. 4. 1. 법무관(사법연수원 수료) 출신 재판연구원 1명 임용
 - 2023. 5.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125명 임용
 - 2023. 8. 1. 법무관(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출신 재판연구원 3명 임용 예정
- ② **선발대상 확대:** 기존 선발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 즉시 졸업자 또는 단기군법무관을 마친 신규 법조인 외에 법조경력자(2020. 1. 1.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까지 선발대상을 확대함

■ **재판연구원 현원 및 배치 현황**

- 재판연구원 현원 349명을 전국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에 배치함
 - 2023. 5. 1. 기준 고등법원 216명, 지방법원 133명 배치

고법	서울고법	117	지법	서울중앙지법	30
	서울고법(춘천)	2		서울동부지법	5
	서울고법(인천)	5		서울남부지법	7
	수원고법	26		서울북부지법	5
	대전고법	11		서울서부지법	4
	대전고법(청주)	4		의정부지법	3
	대구고법	12		인천지법	6
	부산고법	12		춘천지법	2
	부산고법(울산)	3		수원지법	10
	부산고법(창원)	5		대전지법	9
	광주고법	10		청주지법	4
	광주고법(전주)	4		대구지법	16
	광주고법(제주)	1		부산지법	12
	특허법원	4		울산지법	4
	고법합계	216		지법합계	133

편의상 이와 같이 기재함



라. 향후 계획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적정수의 재판연구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예정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재판연구원제도의 운용 방안 등에 관하여도 추후 검토 예정



5. [3안건]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방안

가. 논의의 배경

-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한 경력 이상의 우수한 변호사의 법관 임용 신청을 유도하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전보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청, 법관들의 서울권 근무 희망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순환근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법관임용제도(법관 임용을 위한 선발절차를 지역단위로 하는 것)의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순환근무제도를 대폭 축소할 여지는 있으나, 지역별 변호사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관 임용에 지원할 자원이 충분한지, 전국적으로 균질한 법관을 선발할 수 있을지 등 고려할 필요 있음
 - [참고]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관의 임용단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음
 - 모집은 전국적 단위로, 심사 및 임용은 고등법원 단위로, 보직 부여는 지방법원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단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임용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법관을 선발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단일한 기관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설령 순환근무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인사패턴 및 주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국,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순환근무제도의 유지 여부 및 개선 여부에 관한 포괄적·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나. 현행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관

1) 개요

■ 법관 순환근무제도 운용

- 현재 법원은 내부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권을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근무하는 법관 순환근무제도(경향교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법관 순환근무제도는 수도권 근무에 대한 법관들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상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지방권의 법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채택된 현실적인 방안임

2)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

■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권 3년 ▷ 경인권 2~3년 ▷ 서울권 7년(또는 경인권 진입 후 11년) ▷ 지방권 2년 ▷ 수도권 재진입

■ 지방법원 판사

서울권 초임	서울권 4년 ▷ 지방권 4년 ▷ 경인권 2~3년 ▷ 서울권 4~5년
경인권 초임	경인권 2년 ▷ 서울권 2년 ▷ 지방권 4년 ▷ 경인권 2년 ▷ 서울권 5년
지방권 초임	지방권 4년 ▷ 경인권 3년 ▷ 서울권 8년

3)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순환근무 패턴(현재의 순환근무 패턴 적용시)

■ 5년 경력자 임용시 인사패턴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법조경력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지법부장 인사패턴		
서울초임	연수	1	2	3	4	1	2	3	4	1	2	1	2	3
경인초임	연수	1	2	1	2	1	2	3	4	1	2	1	2	3
지방초임	연수	1	2	3	4	1	2	3	1	2	3	1	2	3



■ 7년 경력자 임용시 인사패턴⁴⁾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법조경력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지법부장 인사패턴		
서울초임	연수	1	2	3	4	1	2	3	4	1	2	3
경인초임	연수	1	2	1	2	1	2	3	4	1	2	3
지방초임	연수	1	2	3	4	1	2	3	1	1	2	3

■ 10년 경력자 임용시 인사패턴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법조경력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지법부장 인사패턴		
서울초임	연수	1	2	3	4	1	1	2	3
경인초임	연수	1	2	1	2	1	1	2	3
지방초임	연수	1	2	3	4	1	1	2	3

■ 지법부장 보임 후 인사패턴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법조경력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23년차	24년차	25년차	26년차	27년차	28년차	29년차	30년차	31년차	32년차	33년차	34년차	35년차
근무권역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경인권 또는 서울권			

4) 종합 분석 및 문제점

- 기존 경력법관과 법조경력 임용법관 사이에 부장판사 보임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⁵⁾ 외에 인사패턴에 특별한 차이는 없음

4) 현재의 부장판사 보임시기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예측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 후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 법조경력 16년차가 될 때 법관경력 10년 요건을 충족시키면 즉시임용법관과 같이 법조경력 16년차에 부장판사로 보임되나, 법조경력 16년차에 법관경력 10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1년을 더 근무하고 법조경력 17년차에 부장판사로 보임됨.

5)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라 5년 경력자가 임용될 경우 법조경력 16년차에 법관경력 10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5년 경력 + 1년 법관 임용 지원 및 평가, 신입법관 연수 + 법원 배치 후 실제 근무 9년) 17년차에 부장판사로 보임됨. 이는 7년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도 동일함



- 현재의 인사패턴에 의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시 일률적으로 지방권 법원에 전보되고(이하 '2차 경향교류'라 함), 2차 경향교류 시에 3년 연속하여 지방권 법원에서 근무하여야 함
- 법조일원화제도 단계적 이행에 따라 법관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인 7년, 10년으로 상향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순환근무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됨
 - 7년 경력자 임용시 서울/경인권 초임은 7년 연속하여 지방권 근무
 - 10년 경력자 임용시 지방권 초임은 8년 중 7년을 지방권 근무

다. [참고] 외국의 사례

▣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해당됨
- 지방자치제가 발달하여 일반주민 및 법관들 사이에 대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미약함
- 나라마다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법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인사(법원 간 순환근무)는 없음
- 독일의 경우 법관 승진으로 인한 법원 이동은 존재함

▣ 일부 지역간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국가 : 프랑스

- 지역간 순환근무(보직)제도가 일부 존재한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우리와 같은 규칙적이고 전면적인 순환과는 다름
- 不動의 原則(Principe de l'inamovibilité)
 - 프랑스 헌법 제64조 제4항은 '법관의 신분은 不可動이다(즉 終身身分保障; 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법관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거나 승진



되지 않고, 정년에 이를 때까지 동일한 법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음

-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한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됨
 - 프랑스의 법관들 중에는 대도시인 파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법관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파리로 전보된 다수의 법관이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에 계속 파리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전면적인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국가 :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순환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사기간, 인사 빈도수 등 순환근무의 정도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처럼 모든 법관들이 거의 평등한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는 않음
- 판사보(대략 사법연수소 종료 후 10년까지)의 경우
 - 최초 발령지에서 2년을 근무하고 이동한 이후부터는 대체로 3년 단위 이동을 원칙으로 하여 왔음. 이 기간에는 근거지와 관계없이 발령함
- 판사의 경우
 - 4, 5년 간격의 이동이 증가함. 다만, 부장의 경우 재판장이 빈번히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함
 - 판사 임명으로부터 10년까지의 경우, 근거지 고등법원과 그 이외의 고등법원을 번갈아 이동하되,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대규모 청에 전입하는 판사로부터 "수년 후에는 최고재판소가 지정하는 청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신사협정과 유사한 서면을 받고 있음 (수도권 편중 때문)
 - 판사 임명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본적으로 근거지 고등법원 관내에서의 이동으로 정착함
- 요컨대, 법관생활 초기에는 여러 법원을 순환하다가, 중견법관 내지 중진 법관이 되면 근무지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라. 법관 순환근무제도 관련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 10. 제16차 회의에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안건을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중 하나로 회부함
- 분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안건 중 세부 주제로서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을 우선 논의하기로 정하였고, 4차례의 회의(제13차 ~ 제16차)에서 관련 논의를 실시함

마. 법관 순환근무제도 관련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1) 순환근무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과제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 논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기존 순환근무제도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관행, 법관의 서열화, 승진제도 등의 토대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법관 정원 증가 및 법조일원화제도하에서는 그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잦은 순환근무제도는 법관 독립성 저해,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저하에 따른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하락, 법관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분과위원회의 제안(자문위원회 건의안)
 - 우수한 법관자원 확보, 법조일원화제도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 등을 위하여 현행 전국 단위의 대규모 순환근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권역별 법관선발제 또는 권역별 법관근무제⁶⁾ 도입 여부

6)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선발하되, 선발절차 자체를 해당 권역에서 하는 것을 권역별 법관선발제라고 하고, 선발 절차 자체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권역별 법관근무제라고 함



■ 권역별 법관선발제 또는 권역별 법관근무제 도입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소수의견은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소 법조경력 10년이 되는 시점 무렵에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권역별 법관선발제나 권역별 법관근무제의 공론화에 대해 찬성하나, 권역별 법관선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방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권역별 법관근무제 역시 법조인의 서울/수도권 집중 경향을 고려할 때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 권역별 법관선발제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이념상 요구되는 바가 아니고, 법조일원화가 권역별 법관선발제를 내포하는 것도 아님. 사실심 단계에서의 법질서 통일 등을 고려할 때 법관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중심의 문화·경제권에서 권역별 법관선발제도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법제도의 지방분권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될 우려도 있음
-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 등 국민의 사법 신뢰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권역별 법관선발·배치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
-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방권 순환근무제 보다는 지방권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서울/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을 가진 법관들로 하여금 지방근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점에서 권역별 법관선발제가 순환근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고, 중앙에서 법관을 선발한 후 임용시점에 또는 임기 도중에 전국 단위로 근무할 법관과 권역에서 근무할 법관을 구분하여 정하되, 권역에서 근무할 법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법조일원화 제도하에서 순환근무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우수한 자질의 법관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순환근무제도를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법관을 선발·배치하는 등 법관 임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는 사법구조를 분권적인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판사는 어떤 지역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 등 고려할 때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특정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인사를 하고, 고등법원 판사나 대법관은 최초 임용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임용하거나 승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ex, 지방법원 판사는 권역별 선발 및 근무를 하도록 하고, 고등법원 판사는 전국단위의 선발 및 순환근무를 하는 방식(형태) 등으로 재편]

● 절충적인 입장

- 권역별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연구원이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성과 분석에서 큰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 법관선발과 권역별 법관선발을 과도기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권역별 법관선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 유착 우려에 대한 불식 등 국민적 공감대가 선결되어야 하고, 법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 권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법관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분과위원회의 제안(자문위원회 건의안)

- 다수의견: 순환근무제도 개선방안으로 먼저 장기근무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권역별 법관선발제도 도입은 법관 임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소수의견: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10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권역별 법관선발 및 근무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순환근무제 인사패턴 및 인사주기 등 개선 여부

■ ① 인사패턴 개선 관련: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기준으로 지방권 법원으로 전보되는 현행 인사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현행 인사패턴을 폐지하고 ① 서울권 초임은 '서울-지방-경인'의 순서로, ② 경인권 초임은 '경인-서울-지방'의 순서로, ③ 지방권 초임은 '지방-경인-서울'의 순서로 순환하되 각 권역별 일정 근무기간은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권 법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 이후 반드시 합의부 재판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인사패턴에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순환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순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려울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 이전 서울/경기/지방에서 모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패턴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폐지된 점, 헌법상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나뉘는 점, 현재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합의 부장이 아닌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일반 판사 사이에 인사패턴을 나눌 필요 없음

■ ② 인사주기 개선 관련: 지방권 근무기간의 단축 및 인사주기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건의사항을 도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수렴함



■ ③ 기타 인사제도 운영 관련: 법관의 임기 10년 중 필수 지방근무기간을 총량으로 정하되, 인사발령 시 각 법관의 희망 지방근무시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지방근무 총량제' 내지 '지방근무 유예신청제'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지방근무시기에 관한 법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지방근무 총량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각 법관의 희망에 따른 인사변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비슷한 법조경력 법관들의 생애주기상 희망 지방근무시기가 일치하여 지방근무 희망자가 부족할 수 있는 점, 지방권 근무를 앞두고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근무 총량제로 최소 지방근무기간을 정하되, 지방 근무기간을 개별적·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근무 우선신청제 내지 지방근무 유예신청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지방근무 총량제를 통해 순환근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근무 총량제도 좋은 제안이나, 이로 인해 인사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분과위원회의 제안(자문위원회 건의안)

- 지방권 법관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대비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방권 법원에 전보되는 현행 인사패턴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지방근무 총량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스마트워크 및 영상재판의 확대 여부

■ ① 스마트워크 확대 관련: 지방권 근무 법관들의 생활안정 방안으로 스마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현행 전보주기 유지시 장기간의 지방권 근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사기록 전자화가 시행되는 시점(2024. 10. 20. 예정)에 맞춰 스마트워크를 확대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 있음
- 스마트워크 확대는 법관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효율적이고,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워크 확대로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 법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 저하 및 업무태만으로 이어질 부작용의 우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워크가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 조사가 필요함

■ ② 영상재판 확대 관련: 영상재판의 확대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견 수렴함

■ 분과위원회의 제안(자문위원회 건의안)

- 장기간 지방권 근무의 보완책으로 스마트워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스마트워크가 업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5) 동일법원 내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방안

■ 논의의 배경

-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 법원 내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였음

▣ **법관 사무분담 변경을 최소화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 다만, 법관 사무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법관 사무분담의 잦은 변경은 업무량의 편차에 기인하므로 법관 사무분담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 수, 처리기간, 처리율 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시스템이 아니라 법관이 실제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판부별 업무량 측정기준으로 투입시간을 반영하여 법관 사무분담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사무분담 변경을 최소화하려면 절대적 평등원칙에서 벗어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법관 업무량 측정을 위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나, 실제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을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기피업무에 대하여 재판부를 증설하거나 사무분담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사무분담 변경의 최소화는 재판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실제 운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일법원 내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견 수렴함**

6) 법원 내부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할 경우 지방권 근무와 연계하는 방안

▣ **논의의 배경**

- 현재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법원 외부(변호사 또는 검사)에서만 전담법관을 선발하고 있는데, 향후 법원 내부(현직 법관)에서도 선발하되 지방권 법원 위주로 선발하여 지방권 근무와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



를 실시하였음

▣ **법원 내부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여 지방권 근무와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법관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직 법관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할 경우 사무분담을 민사소액 및 민사단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지역계속근무제도나 장기근무제도와 어떠한 차별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전담법관의 경우 그동안 소수로 선발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임용을 해왔는바, 지방권에서 근무할 전담법관 임용 확대를 고민할 시점이 왔음. 다만, 지방권에서 근무할 전담법관 임용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지역거점법관 선발 확대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검토할 만하나, 법원 외부에서 선발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같은 고려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수 있음. 2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한 지역계속근무제도나 장기근무제도와와의 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아닐 것으로 보임

▣ **법원 내부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할 경우 지방권 근무와 연계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법관 순환근무제도 개선’ 다음 논의 주제인 ‘법관 다양성 확보 방안’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6. [기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획

가. 개요

■ 추진 배경

- 2023년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 경과와 현황, 향후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함

■ 공동 주최: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

-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이 법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함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동 주최 기관이 법조일원화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함과 더불어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기초로 향후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토론 참가: 공동 주최기관 이외 법무부, 법률신문, 국회입법조사처 등

-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를 다양한 시각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심포지엄에서의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구성(안)

1) 명칭

-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과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2) 일시 및 장소

- ▣ 2023. 7. 14.(금) 13:30 ~ 18:00, 대법원 대강당

3) 방식

- ▣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중계 병행

4) 예상 프로그램

▣ [기조 발제]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경과

-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경과, 법관 임용 절차 및 인적 구성의 변화,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전담법관 제도,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활동 등) 등 보고
- 발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 [제1주제]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

-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발제
- 좌장: 송관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前 사법연수원 교수, 前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 발제: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토론 3인 예정

▣ [제2주제]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

- 제1주제에서 논의 된 쟁점들을 통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 설계의 방안 제시 내지는 실무상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부분이 될 것임
- 좌장: 이재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제: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3인 예정



다. 심포지엄 일정(안)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30')	개회사	대법원장
	축사/ 환영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대한변협회장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박은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14:00-14:10 (1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4:10-14:40 (30')	[기조 발제]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경과	
	발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14:40-14:50 (10')	휴식	
[제1주제]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		
14:50-16:30 (100')	좌장	송관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발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김신유 부장판사(춘천지법 영월지원장)
	토론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연 기자(법률신문)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6:30-16:40 (10')	휴식	
[제2주제]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		
16:40-18:00 (80')	좌장	이재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현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최수봉 검사(법무부) 이태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7. 기타 참고사항

가. 변호사 현황⁷⁾

▣ 지역별 개업변호사(휴업 및 미개업 회원 미포함) 수

연도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⁸⁾	합계	지방권 비중
2023년	21,183명	2,323명	4,598명	28,104명	16.4%

- 2023년 지역별 개업변호사(휴업 및 미개업 회원 미포함) 수는, 서울권이 21,183명, 경인권이 2,323명, 지방권이 4,598명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75.4%가 서울에서, 83.6%가 서울권 및 경인권에서, 16.4%가 지방권에서 개업함

▣ 연도별 개업변호사(휴업 및 미개업 회원 미포함) 수

연도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합계	지방권 비중
2012년	8,314명	1,158명	2,019명	11,491명	17.6%
2013년	9,624명	1,257명	2,245명	13,126명	17.1%
2014년	10,984명	1,380명	2,543명	14,907명	17.1%
2023년	21,183명	2,323명	4,598명	28,104명	16.4%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최초로 배출된 2012년 이후 2년간 지방권 변호사는 524명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변호사는 3,416명 증가하였음. 지방권 변호사수의 증가 비율은 전체 증가 비율의 15.3%에 해당함
- 2012년 이후 11년 간 지방권 변호사는 2,579명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변호사는 16,613명 증가하였음. 지방권 변호사 수의 증가 비율은 전체 증가 비율의 15.5%에 해당함

7)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회원 현황(2023. 5. 31. 기준)” 참조

8) 강원지역 포함(이하 “지방권” 동일)



▣ 권역별(서울고등, 수원고등, 강원 제외) 변호사 수와 법관 수의 비교

지역	대전고등 ⁹⁾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합계
변호사 수	927명	751명	1,706명	1,040명	4,424명
법관 수	280명	209명	394명	286명	1,169명
비율	3.3	3.6	4.3	3.6	3.8

- 2023년 전체 법관 정원(3,214명) 대비 개업변호사(휴업 및 미개업 회원 미포함) 수(28,104명)는 8.7배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권 법관 수 대비 변호사 수는 3.8배에 해당하여 지방권의 변호사 분포가 현저히 적음

▣ 지방회별 개업변호사(휴업 및 미개업 회원 미포함) 수

지방회	개업회원	준회원 (휴업 및 미개업)	합계
서울	21,183명	4,358명	25,541명
경기북부	474명	71명	545명
인천	674명	111명	785명
경기중앙	1,175명	282명	1,457명
강원	174명	43명	217명
충북	193명	50명	243명
대전	734명	142명	876명
대구	751명	127명	878명
부산	1,086명	198명	1,284명
울산	218명	25명	243명
경남	402명	72명	474명
광주	587명	139명	726명
전북	311명	56명	367명
제주	142명	36명	178명
합	28,104명	5,710명	33,814명

9) 대전고등법원 권역 내 특허법원 포함(이하 “대전고등” 동일)



나.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 권역별(서울고등, 수원고등, 강원 제외) 국선전담변호사 수

지역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합계
국선변호사 수	19명	15명	24명	17명	75명

다.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 권역별(서울고등, 수원고등, 강원 제외)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및 지역 균형인재 의무선발인원 규모

지역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합계
로스쿨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제주대	10개
정원	170명	190명	200명	300명	860명
지역균형인재 의무선발인원	15%	15%	15%	15% (단, 제주대 5%)	

▣ 2019년 ~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¹⁰⁾

● 출신대학별 현황

학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교	478명	476명	413명	405명	425명
타교	1,658명	1,654명	1,713명	1,737명	1,731명
계	2,136명	2,130명	2,126명	2,142명	2,156명

● 전공별 현황

학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학	394명	317명	228명	175명	158명
비법학	1,742명	1,813명	1,898명	1,967명	1,998명
계	2,136명	2,130명	2,126명	2,142명	2,156명

1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일반 현황” 참조



● 특별전형 현황

학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160명	165명	164명	162명	171명

■ 참고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